

기안용지

(전화: 931-6346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성30312-277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①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	
시행일자	85.6.9		
보조 기관	도시계획과 시정관리과 시정계획과	협조 기관	문서 통제
기안책임자	박 필 용	법무담당관 형조등계관 행정과장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		
제 목	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		
제 1 안 내부결재			
1. 성동구청장으로 부터 (87.5.18 도정 30310-14155)			
서울시 고시 제 460 호 (78.9.8)로 결정고시된 성동구 옥수동			
233-16 소재 옥정국민학교에 대하여 도로와 중복결정된			
부부와 민원인 토지에 대한 일부해제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			
본 학교는 고지기준 편적이 적합하는등 본건 해제 하여도 문제가			
없으므로 해제조치 하고자 합니다.			
2. 현 황			
옥정국민 학교			

· 면적 : 15.008 M² (78.9.8 서고 460호로 결정)

· 학생수 : 44 학급 2.195 명

· 설립년월일 : 71. 5. 22.

· 실사용면적 : 14.200 M² (기권면적 10.878 M²)

※ 별첨 도면 참조.

· 도로 (계항도로 및 현항도로)

구	분	구	보	시설	결정	일	비	고			
계	항	도	로	폭 : 12M 연장 : 550M	'81. 9. 2		각	개	설		
현	항	도	로	폭 : 6-8M	'80		80	년	도로	포	장

3. 관련사항 검토

· 민원사항 (87. 3. 25 성동구청에 제출)

· 민원인 : 나상열 (옥수동 365-22)

· 운 지 : 옥수동 200-8 별 200-1호 토지 소유자로서

학교와는 무관한 위치 (특6M 도로포장 건너편) 이므로 조속 해제
요망.

추진경위

· 87. 3. 25 : 민원서류 제출 (민원인 - 성동구청)

· 87. 4. 14 : 해제 요청 (성동구 - 서울시)

· 87. 4. 16 : 일괄 검토처시 (서울시 → 성동구)

· 87. 5. 18 : 민원인 토지 및 중복결정부분 해제요청.

(성동구 → 서울시)

* 현행도로 부설 검토미진

· 처리 방법

·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의한 경미한 사항
변경으로 처리가능.

1. 취급 방법

· 민원서류인전은 감안하여 우선 민원인 토지 및 중복
결정 부분을 변경조치함과 동시에

· 현행도로 부설을 검토하여 입안하도록 지시코져 함.

(현행도로 부설을 포함 일괄 변경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
불가하며 민원공백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민원조치권리 불가)

첨부: 관련서류 1건.

제2항 고시 안
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

도시계획 시설(학교) 변경결정

249번사	1987. 12. 21/93호	
담당자	법제제장	사무장
	FR	CS

1.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

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제 6 조 1 항의
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제 12 조
 4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시범 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
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다.

1987년 1월 15일
 서울특별시 강남구

가. 학교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 설 명 칭	지	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국민학교(후정)	성동구	옥수동 233-16 일대	15.008	
변경	"	"	"	14.613	±, 395㎡

나. 도면 : 성동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

제 3 단

수신 : 건설부 장관

참조 : 도시시설 계획과장

폐곡 : 같 음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별안과
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원부: 고시본사본 별도면 각 1부.

붙.

제 4 안

수신: 총부처 장관

제 목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의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 시

나. 게재전평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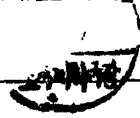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 12 조

라. 게재내용: 별첨 고시본

원부: 고시본사본 2 부.

제 5 안

수신: 서울구청장



참조: 도시정비과장

제 목: 같 글.

1. 도정 30310-14155 (87.5.18)의 관련임.

2. 지구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고 통보하니 도면정리 및 관계과에 통보함을 들은 지적승인 하는등 도시계획 업무에 차도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

3. 본건 관천인첩을 감안하여 우선 시설결정변경 하였으니
현황도르 부본에 대하여 고지기준편각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
검토하여 입안 진달 하기 바랍.

첨부 : 고지문 밑 도면 각 1부.

제 6호

수신 : 서주시 보육지원팀 교육감.

제 목 : 같 음.

1. 서주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을 별첨과 같이 변경
결정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지문 사본 밑 도면 각 1부. 끝.

제 7호 P67

수신 : 수신처 함소

제 목 : 같 음.

1. 서주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에 대하여 별첨과
같이 고지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지문 사본 밑 도면 각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. 도로과장. 지적과장.